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최승혁 허태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형사처벌 판단자가 가지는 현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한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정세상 기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범죄자의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참가자 106명은 Rubin과 Peplau(1975)의 공정세상 믿음 척도(the just world scale)와 이 척도에 근거해 발전시킨 '공정세상 기대' 척도에 응답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또는 낮은 범죄자가 상해치사를 저지른 시나리오를 읽고 처벌형량을 결정하였다. 형량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기대' 및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와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분석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의 정도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형량의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판단자의 '공정세상 기대'만이 형량 판단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한 사람일수록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더 중요하게,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당위적 기대와 상관없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유사했지만, 현재 사회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클수록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사회적 판단과 형사처벌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실용적 의미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공정세상 기대, 범죄의 전형성,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대통령, 8.15 경축사 중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였다(조선일보, 2010, 8, 15).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화두가 정치권은 물론 경제, 교육, 행정, 사법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떠올랐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이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허태균, 주소: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3290-2862, E-mail: tkhur@korea.ac.kr

사회의 공정함은 어느 정도일까? 2010년 9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73.6%)은 ‘공정한 편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24.1%)보다 약 3배 가량 많았다. 특히,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여겨지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공정성 정도는 20%대에 그쳤고, 사회 공정성 유지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원의 공정성 정도는 31.5%로, 이들 사법·사정 기관의 공정성 정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윤희웅, 2010).

이렇듯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정성 유지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풍조부터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 불신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했는데,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과 같은 부정적 논란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논란은 필연적으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2007년에 이르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포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일반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결 및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로, 사법판단과 관련한 부정적인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문성우, 2007, 5, 25).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해가 갈수록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대법원, 2010, 3, 12), 이러한 확대 추세는 일반국민들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처벌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국내 학계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예, 고재홍, 1991; 1995; 김범준, 2007; 김범준, 최승혁, 2008; 박희찬, 김혜숙, 2010;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최훈석, 박은영, 2008).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사회지도층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 연구는 최승혁 등(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사회의 공정성 인식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탐구한 처벌판단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다만, Freeman(2006)이 처벌판단을 함에 있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가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는지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한 편만이 수행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즉, 사법 불신 논란의 당사자 계층인 사회지도층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들이 어떠한 처벌판단을 내리는지,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현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으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져야 된다고 기대하는 지에 따라 처벌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범죄의도, 범죄동기, 특히 고정관념 등과 관련되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되어왔다. 실제로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낮을 수록 더 범죄성이 높을 것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해왔다(예, D'Alessio & Stolzenberg, 1993; 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Freeman, 2006; Hoffman, 1981; Mazzella & Feingold, 1994; Osborne & Rappaport, 1985), 예를 들어, Mazzella와 Feingold(1994)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매력,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이 모의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메타분석했다(미국과 캐나다에서 출판된 연구들만 포함함). 이 중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가 더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수가 너무 적어(절도 1건, 강간 1건, 과실치사 1건), 유죄성과 처벌 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는 각각 .15로 매우 낮았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처벌의 강도를 측정한 연구는 강간 사례와 과실치사 사례 2건 뿐이며, 강간사례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와 일관되게 최근의 Freeman의 연구(2006)는 강도살인 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이 처벌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고, 판단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queda, Espinoza, 및 Culhane(2008)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인종과 범죄유형(횡령, 자동차 절도)을 조작하여 2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미국사회의 주류집단인 유럽계 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같은 유럽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럽계 미국인들은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멕시코계 미국인이나 유럽계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다 더 범죄자를 비난했고, 더 범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봤으며, 더 유죄 평결을 많이 내렸고, 더 긴 형량을 부과하는 등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했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 유럽계 미국인이 범죄자일 때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이 자동차 절도를 저질렀을 때, 횡령을 저질렀을 때 등과 같은 여타의 조건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특질(비호감, 무능력 등)이 크다고 판단했다. 멕시코계 미국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2에서는 범죄자의 민족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또한 국내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을 조사한 최승혁 등(2009)의 연구결과와 Esqueda 등(2008)의 연구 2의 결과와 유사하게 처벌판단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최승혁 등(2009)의 연구 2에서는 횡령범죄의 경우에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는 통제하고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조작하여 두 집단 간의 형량 판단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범

죄자의 사회적 지위가 형량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처벌판단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 간의 불일치는 연구 방법에서 범죄 유형 또는 범죄 상황과 같은 잠재적 조절요인들이 혼입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Esqueda 등(2008)과 최승혁 등(2009)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전형적인 범죄 또는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는 전형적인 범죄에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역으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된 상황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공정한 세상과 처벌판단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믿는가에 대해 일찍이 Lerner(1965)는 공정세상 이론(just world theory)을 주창하였다. 이후 Rubin과 Peplau(1975)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정세상 척도(just world scale)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이 개념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연구자들(Lerner, 1965; Lerner & Miller, 1978; Rubin & Peplau, 1975)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으려는 인지적이고 동기적인 욕구가 있다. 즉, 사람들은 세상사 중 순전히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믿으려 하는데,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통제감 및 미래 사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 등과 같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나태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며,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부주의했거나 어떤 범죄를 제공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믿음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험 및 학습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공정세상 믿음(belief in a just world)과 관련하여, 피해자 비난(예, Brems & Wagner, 1994; De Judicibus & McCabe, 2001; Lambert, Raichle, 2000),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예, Dittmar & Dickinson, 1993; Lambert, Burroughs, & Nguyen, 1999; Lambert, Raichle, 2000)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에 관해서는 해외연구가 일부 있을 뿐 국내에는 전혀 없었다. Izzett(1974; Rubin & Peplau, 1975에서 재인용)은 참가자들에게 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 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자에게 양형을 결정하게 했다. 연구 결과, 현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보다 범죄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p < .10$). 실제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Gerbasi와 Zuckerman의 연구(1975; Rubin & Peplau, 1975에서 재인용)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Rubin과 Peplau(1975)의 해석에 따르면, 공정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범죄와 같은 불공정한 사건을 접했을 때, 세상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피해의 책임을 주로 피해자의 실수 또는 잘못 탓으로 귀인하려 한다. 그러나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이 있고, 피해가 명백히 타인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범죄자로 지목되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 강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자의 처벌 판단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의 역할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이 공정하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의 한 연구(Freeman, 2006)는 공정세상 믿음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는 강도살인 사례가 제시되었고, 범죄자의 유죄성 정도(degree of guilt), 처벌의 강도(severity of sentencing) 등을 판

단하게 했다. 연구 결과, 범죄자의 유죄성 판단에 공정세상 믿음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현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범죄자에게 더 유죄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서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듯 기존연구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로 인해 결론내릴 수 없었던, 공정세상 믿음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처벌판단에서 공정세상 믿음의 역할은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통제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때로는 강한 처벌판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옹호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의지를 줄이는 억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법원행정처, 1999), 처벌판단이 오히려 현재의 공정세상 믿음보다는 공정세상 기대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정세상 기대는 자신의 사회가 반드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반영한 개념을 의미한다. 공정세상 믿음과 그에 근거해서 제안하는 공정세상 기대는 자기차이론(self-discrepancy; Higgins, 1987)의 현실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와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기차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현실적 자기와 동시에 자신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다고 생각하는 당위적 자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들 간의 차이가 지각되면 그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제안하였다. 같은 논리로, 공정세상 믿음이 낮고, 즉 현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고 동시에 공정세상 기대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서 미래에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는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미래의 세상을 지금보다 더욱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Taylor(1979; Fiske & Taylor,

1984/1992, pp. 150-156에서 재인용)는 사람들이 통제감을 상실했을 때, 이에 반발(reactance)하거나 또는 무기력(helplessness)하게 대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공정세상 믿음과 기대의 차이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에 따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무기력의 경우는, 자기통제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불공정한 사건을 접했을 때, 이에 대해 무기력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의 세상이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론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관련하여 고려해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정의롭게 해치는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결국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제안하고, 이들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현재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욱 더 공정해져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 및 욕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공정세상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공정세상 기대의 크기에 상관없이 처벌판단을 내리겠지만, 공정세상 믿음이 낮은 사람들 중에 특히 공정세상 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강한 형사처벌을 통해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처벌판단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판단자의 공정세상 믿음의 역할을 조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특히 Esqueda 등(2008)과 최승혁 등(2009)에 근거하면, 범죄의 전형성이 기존의 비일관된 연구결과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하면 처벌의 강도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사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미래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당위적인 기대가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미래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강한 처벌판단을 통해서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수도권 소재 K 대학교, 충남 소재 N 대학교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06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은 18세에서 30세까지로, 평균(SD) 20.5(2.17)세였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상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건(남 23명, 여 25명) 또는 낮은 조건(남 28명, 여 30명)에 무선 할당되었다.

범죄 시나리오 및 측정 도구

범죄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상해치사¹⁾ 시나리오는 형법 250조에 근거해 신문기사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약 징역 4년형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상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높게 혹은 낮게 조작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내용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지위를 조작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의 구성은 동일했다. 또한, 범죄 상황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느 쪽에도 전형적이지 않도록 통제하였다²⁾. 범죄

1)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한 죄. 즉,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사람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일컫음.

2) '범죄의 전형성' 통제는, 시나리오 상 범죄의 우발적 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김00(40대 초반, 남성)씨는 A(40대 후반, 남성)씨에게 폭행을 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00씨는 2009년 12월 경, 모 주점 부근 노상에서 A씨와 어깨를 부딪쳐 자신의 가방 등 소지품이 바닥에 흩어지자,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이 오가다 싸움이 커져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A씨에게 우측 두정측 두부좌상 등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주일 뒤 우측 경뇌막하 출혈 및 뇌연화증으로 사망하였다. 김00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의 다른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고: 김00씨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인력으로 중견기업인 **회사의 전문경영인(CEO)으로 활동하면서 1년에 약 2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 사회경제적 지위 저: 김00씨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중견기업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약 2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공정세상 믿음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지각하며 믿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Rubin과 Peplau(1975)가 개발한 공정세상 척도(just world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척도의 번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자가 영문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세 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에게 문장의 유연성과 타당성을 검토 받아 번역본을 완성했다. 이후 번역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중 언어자 두 명이 이 번역본을 영문으로 역번역하였고, 이 역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가 같은지 확인한 후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6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6 =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역

생 가능성을 부각시켜 범죄의 원인이 범죄자의 개인적·성향적 특성(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보다는 범죄의 상황적 특성에 더 귀인될 수 있도록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범죄자가 초범임을 상정함으로써, 그리고 범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시비 끝에 이루어진 것을 상정함으로써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작하였다.

채점 문항은 9문항이다. 본 척도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평한 곳이다’, ‘한국 법정에서 죄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역채점 문항)’.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였다.

공정세상 기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공정해야 된다고 바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번안한 공정세상 척도를 근거로 공정세상 기대 척도를 제작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 1명이 공정세상 척도의 각 문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형식으로 수정하였고, 다른 연구자 1명과 함께 원척도의 각 문항과 비교하여 그 의미는 같으면서 당위적인 기대를 반영하는지 문장의 유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공정세상 척도와 같이 모두 20개의 문항이었고 6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6 =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반드시 세상은 공평한 곳이어야 한다’, ‘한국 법정에서 죄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

‘당신이 법관이라면, 위와 같은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징역형)을 내리시겠습니까?(최저 1개월부터 최고 3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은 년 단위로 반올림하여 코딩하였다.

절차 및 자료분석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과 연령에 응답했고, 공정세상 믿음 척도에 응답했다. 공정세상 믿음 척도에 대한 응답 자체가 뒤에 오는 처벌판단과 공정세상 기대 응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정세상 척도와 뒤에 오는 처벌판단 시나리오 사이에 본 연구와 전혀 관련 없는 설문(2쪽 분량)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어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또는 낮게 조작한

상해치사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한 후 형량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세상 기대 척도에 응답한 후 자료수집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설문을 포함하여 총 5쪽 분량의 설문에 응답했고,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척도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조작점검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했다. 그리고 형량 및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형량에 대한 변인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조작 점검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작 점검을 위해서 ‘당신은 위와 같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범죄의 전형성은 ‘당신은 위와 같은 범죄자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전형적이라고(얼마나 그들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모든 점검 문항은 9점 척도(1 = 매우 낮다; 매우 전형적이지 않다 ~ 9 = 매우 높다; 매우 전형적이다)로 구성되었다.

조작집단 간 *t*-test 분석결과,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작과 범죄의 전형성 통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설정한 집단(M = 6.60, SD = 1.78)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설정한 집단(M = 3.84, SD = 1.15) 보다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높게 지각했다, $t(77.44) = 9.24, p < .001$. 또한 범죄의 전형성 정도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M = 4.44, SD = 1.96)과 낮은 집단(M = 4.38, SD = 1.76)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04) = .16, p = .872$.

공정세상 믿음, 공정세상 기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량 간 상관관계

형량 및 예측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공정세상 믿음, 공정세상 기대, 사회경제적 지위, 형량 간 상관

	1	2	3	4
1.공정세상믿음	1			
2.공정세상기대	.114	1		
3.사회경제지위	-.090	-.093	1	
4.형량	-.062	.257**	.040	1
M	3.38	4.47	1.45	8.76
(SD)	(.46)	(.63)	(.50)	(8.34)

주. 사회경제지위 1=낮음, 2=높음

** $p < .01$

분석 결과, 형량과 공정세상 기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r = .257, p = .008$, 여타의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변인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가 서로 같은 개념을 반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대로,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해 주었다.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현 세상에 대한 공정성 믿음과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공정성 기대 및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때, 예측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한 모든 변인들을 센터링(centering) 하였다.³⁾

3)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들 변인들을 조합하여 상호작용 변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의 독립변인들(주효과 항)과 생성된 독립변인들(상호작용 항)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독립변인들을 센터링하여 다중공선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박광배, 2003, pp. 318-320; pp. 335-343 참고)

표 2. 형량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 공정세상 기대, 사회경제적 지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SE B	β	P	R ²	ΔR^2	F	P
1	(상수)	8.764	.808		.000	.015	.015	1.564	.214
	범죄전형성	.552	.441	.122	.214				
2	(상수)	8.807	.793		.000	.086	.071	2.364	.058
	범죄전형성	.414	.434	.091	.342				
	공정세상믿음(A)	-1.501	1.758	-.082	.395				
	공정세상기대(B)	3.454	1.273	.262	.008				
	사회경제적지위(C)	.457	.799	.055	.568				
3	(상수)	8.994	.796		.000	.131	.046	2.116	.049
	범죄전형성	.646	.449	.143	.153				
	A	-1.225	1.762	-.067	.489				
	B	3.122	1.274	.237	.016				
	C	.268	.796	.032	.737				
	A * B	-6.135	2.712	-.223	.026				
	A * C	.695	1.793	.038	.699				
	B * C	-.404	1.266	-.031	.750				
4	(상수)	8.994	.805		.000	.131	.000	1.833	.080
	범죄전형성	.647	.455	.143	.158				
	A	-1.223	1.783	-.067	.494				
	B	3.121	1.284	.237	.017				
	C	.269	.805	.032	.739				
	A * B	-6.132	2.741	-.223	.028				
	A * C	.696	1.806	.038	.701				
	B * C	-.405	1.276	-.031	.751				
A * B * C	-.024	2.700	-.001	.993					

먼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집단 간에 범죄의 전형성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지만, 보다 더 확실히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 모형에 이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2단계 모형에는 주효과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3단계 모형에는 각 변인들 간의 곱으로 생성한 이원상호작용 변인들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3가지 예측 변인들의 곱으로 삼원상호작용 변인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예측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증 계수로는 Tolerance⁴⁾를 사용

했다. 모든 변인들은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보여(범죄전형성 .889; A .940; B .943; C .961; A*B .901; A*C .924; B*C .963; A*B*C .928),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인들로 형량 판단의 약 11.6%가 설명되었다. 1단계 모형에서 통제변인인 범죄 전형성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2단계 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

4) Tolerance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Tolerance 값은 예언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치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Tolerance 값이 어떤

변인에 대해 0에 가까울수록, 이 변인과 다른 예언변인과의 관계는 강해진다"(Brace, Kemp, & Snelgar, 2003/2007, p. 249).

대가 높을수록 범죄자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beta = .262, p = .008$. 현재 세상에 대한 공정성 믿음 및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원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형량 판단에 대한 설명력이 약 4.6% 증가했고 회귀모형이 유의미 하였다, $F(7, 98) = 2.116, p = .049$. 즉,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고, $\beta = -.223, p = .026$. 여타 변인들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삼원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4단계 회귀모형에서는 더 이상 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았고 삼원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3단계 회귀모형에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효과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3단계 회귀모형의 방정식에 4가지 점수를 대입하여 완성했는데, 4가지 점수는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 변인 각각의 평균에서 각각의 1 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빼 값을 사용했다(장훈, 한성열, 2010 참고).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미래의 세상이 공정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기대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형량 판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을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공정성 기대가 클수록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했고, 기대가 작을수록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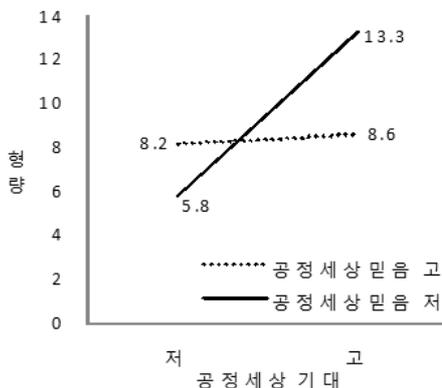


그림 1. 형량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효과

논의

본 연구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들이 어떠한 처벌판단을 내리는지, 특히 그들이 현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져야 된다고 기대하는 지에 따라 처벌 판단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한 대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처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쪽에도 전형적이지 않도록 범 죄 상황을 통제하면, 처벌 판단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판단자들이 더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범죄 시나리오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저지를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절도, 강도, 강간, 살인 등) 또는 범죄 상황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최승혁 등(2009)의 연구 2에서 횡령범죄 시나리오를 제시 받은 판단자들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역으로 경제적 지위가 같은 두 집단 모두 전형적으로 횡령 범죄를 저지를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 판단의 관계의 기저에 있는 범죄의 유형 또는 상황의 고정관념적 역할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처벌 크기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의 주효과는 없었지만, 세상이 공정해져야 된다는 당위적 기대가 강할수록 판단자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더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이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과정은 현재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느냐 보다는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공정해져야 된다고 바라고 기대하느냐의 강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의 옹호적 목적과,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의도를 약화시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형벌의 억제적 목적(법원행정처, 1999)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형벌의 목적에 더욱 근접한 공정세상 기대가 공정세상 믿음보다 처벌의 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처벌의 강도에 대한 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현재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미래의 세상에 대한 공정성 기대가 크든지 작든지 처벌의 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현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공정해야 된다고 강하게 바랄수록 범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였고, 공정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할수록 더 약한 처벌을 부과하였다. 이는 현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 현 체제에 무기력하게 순응 또는 체념하거나 현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나설 수 있는데 (Taylor, 1979; Fiske & Taylor, 1984/1992, pp. 150-156에서 재인용), 현 체제를 지금보다 더 정의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의롭지 못한 범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라는 우리의 추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는 현재 세상에 대한 공정성 믿음이 미래의 세상에 대한 공정성 기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 즉 사법판단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현재의 지각과 미래의 기대의 역할을 밝힌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했을 때, 처벌 강도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연구는 증명했다. 그러나 범죄의 전형성을 통제하지 않고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으로 또는 전형적이지 않게 범죄의 전형성을 조작했을 때, 처벌판단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다만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작을 통하여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죄의 전형성 간의 관계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범죄의 전형성과 판단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

위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 또한 처벌판단에 대한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비록 소수이지만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지 않게 공정세상 믿음이 처벌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Freeman(2006)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정세상 믿음은 범죄자의 유죄성 정도나 비난 정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처벌의 강도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정세상 믿음은 공정세상 기대와 상호작용하여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재차 확인하고, 이에 더해 범죄자의 유죄성 정도나 비난 정도 등과 공정세상 믿음 및 공정세상 기대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처벌판단과 관련된 사회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공정성 인식의 역할을 더욱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서의 통상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있어서의 최종 의사결정은 개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집단 내·외의 역동이 반영된 집단 의사결정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실험 연구는 실제 배심원단이 고려하는 수많은 변인들, 즉, 물리적 증거, 정황 증거, 목격자 및 전문가 증언 등이 충분히 다루어 지지 못했고, 실제 범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범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처벌 판단을 내리게 한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배심원단의 판단은 유·무죄 판단부터 형의 종류와 형량의 결정, 그리고 결정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본 연구는 형량의 결정만으로 처벌 판단을 하게 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형사사법 판단의 영역에서 사회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공정성 인식과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사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과 판단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고 운용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의 공정성 인식 요인을 넘어서, 처벌판단의 기저에 있는 범죄유형, 판단자, 범죄자 및 피해자 요인들 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처벌판단에 관한 한 가상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21.
- 고재홍 (1995). 처벌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1(3), 57-73.
- 김범준, 최승혁 (2008).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43-361.
- 대법원 (2010, 3, 12). 대법원, 시행 2년을 맞이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업무성과 분석 - 정착단계를 넘어 확대 추세. *대법원보도자료*.
- 문성우 (2007, 5, 25). 비슷한 범죄엔 비슷한 처벌... '법 앞의 평등' 구현. *국정브리핑*.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2), 27-49.
- 법원행정처 (1999). *양형실무*. 서울: 법원행정처.
- 윤희웅 (2010). [KSOI의 여론스코프] "우리사회는 불공정" 74%. *위클리경향*, 895, 36.
- 장훈, 한성열 (2010). 몰입(flow) 기능의 재구성: 몰입과 행복 관계에 대한 타인맥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4), 43-62.
- 조선일보 (2010, 8, 15). 이 대통령, 8.15 경축사 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5/2010081500246.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3(3), 1-17.
- 최훈석, 박은영 (2008).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2(4), 175-195.
- Brace, N., Kemp, R., & Snelgar, R. (2007).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 제2판 [*SPSS for psychologists: A guide to data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s, second edition*]. (이주일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3에 출판)
- Brems, C., & Wagner, P. (1994). Blame of victim and perpetrator in rape versus thef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363-374.
- D'Alessio, S. J., & Stolzenberg, L. (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sentencing of traditional off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71-74.
- De Judicibus, M., & McCabe, M. (2001). Blaming the target of sexual harassment. *Sex Roles*, 44, 401-407.
- Dittmar, H., & Dickinson, J. (1993). The perceived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sociopolitical ideology. *Social Injustice Research*, 6(3), 257-272.
- Esqueda, C. W., Espinoza, R. K. E.,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mock jur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2), 181-199.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 Fiske, S. T. & Taylor, S. E. (1992). *사회인지론* [*Social cognition*]. (박오수 역). 서울: 법문사. (원전은 1984에 출판)
- Gerbasi, K. C., & Zuckerman, M. (1975, April).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jury biasing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unpublished).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ffman, E. (1981). Social class correlates or perceived offender typicality. *Psychological Reports*, *49*, 347-350.
- Izzett, R. (1974). Personal communication, (unpublished).
- Lambert, A., Burroughs, T., & Nguyen, T. (1999). Perceptions of risk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The role of just world beliefs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643-656.
- Lambert, A., & Raichle, K. (2000).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mediating judgements of blame in rape victims and their assailants: A test of the just world,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egitimization hypothe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853-863.
- Lerner, M. J. (1965). 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function of performer's reward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355-360.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44.
- Osborne, Y. H., & Rappaport, N. B. (1985). Sentencing severity with mock jurors: Predictive validity of three categor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 467-473.
- Rubin, Z., & Peplau, L. A. (1975). Who believes in a just world? *Journal of Social Issues*, *31*(3), 65-89.
- Taylor, S. E. (1979). Hospital patient behavior: Reactance, helplessness, or control?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56-184.

Criminal Punishment for Just Society: The Interaction of Just World Belief and Hope

Seung-Hyuk Choi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jurors' just world belief and just world hope, and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 criminal punishment. 106 participants completed the just world belief(Rubin & Peplau, 1975) and the 'just world hope' scales and then made punishment decisions on a case scenario that described a bodily injury resulting in death.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reveal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just world hope. Specifically, people who were holding higher hope to achieve a just world in future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assign harsher sentence to the defendant regardless of his/her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main effect of just world belief and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More interestingly and of importance,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just world belief and just world hope was found. That is, even though participants with high just world belief did not differ on punishment regardless of just world hope, those who believe the current society unjust were more likely to sentence the defendant to harsher punishment when they were holding high(vs. low) just world hope. Psycholog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also the essentials of criminal punishment were suggested for the just world.

Keywords: criminal punishment, just world belief, just world hope, crime typicality, socioeconomic status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1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5일